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의 간소화
- 나. 양 당사국의 관세법, 규정 및 행정절차의 적용에서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의 보장
- 다. 가능한 한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통관 보장
-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의 원활화,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 증진

제4.2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운영
 - 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협정의 이행과 운영
 - 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2. 각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장에 규정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4.3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그리고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제4.4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 또는 대체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자국 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특송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한다.

제4.5조

위험관리

1. 통관 절차를 운영할 때, 각 관세 당국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한다.
2. 위 규정은 당사국이 보다 광범위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는 품질 관리 및 법규 준수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4.6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각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이하 “AEO”라 한다) 개념의 이행을 증진한다. 국제무역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AEO 안전 지위의 인정이 양 당사국에 의하여 고려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관세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어떠한 당사국이든 그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지위를 가진 업체에 대하여 무역 원활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4.7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행정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4.8조

종이 없는 통관 절차

각 당사국은 무역 및 무역 관련 정보의 전송에서의 전자 제출 및 문서의 전자본이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통하여 무역의 효율성을 현격하게 향상시킬 종이 기반 방식의 대안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각 당사국은 종이 없는 통관 절차의 이행과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4.9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상품의 수입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상품의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사전심사결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조사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일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조건으로,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판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전심사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4.10조

통일 절차

양 당사국은 관세 사안 및 관련 주제에서 이 협정의 운영, 적용 및 해석에 필요할 수 있는 통일 절차에 합의한다.

제4.11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자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그 밖의 모든 인이 다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재심사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당국보다 상위의 기관이나 그러한 공무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 그리고

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2.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보는 청구인에게 제공된다.

제4.12조

비밀유지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급된다.
2. 위에서 언급된 정보는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4.13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관세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통일된 해석, 적용 및 운영

나. 이 협정의 목적상 품목분류, 평가 및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사안의 처리

다. 원산지 규정의 검토

라. 그들 각자의 법의 변경에 대한 정기적 갱신을 양 당사국의 양자대화 포함

마. HS의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바.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가 회부한 그 밖의 모든 관세 관련 사안의 고려

2.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위원회는 관세 당국과 필요한 경우, 각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의 절차규칙을 작성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하고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통일 절차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4.14조

이행 및 기술적 사안

협정 후, 필요한 경우, 양측은 행정 방안을 내리거나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